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무원중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제32조(기간제교원), 「경기도 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결격사유를 확인 후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규칙」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무원중학교에서는 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직 등 기타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2021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시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미실시하고,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대체직 채용시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하거나 동일 근로자의 이전 대체직 채용시 결격사유 조회한 내역으로 업무 진행하는 등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 등 채용 결격사유 조회 누락 현황

직(종)	성명	임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여부			
			신원조사일	신원조회일	성범죄경력 조회일	아동학대 전력조회일
교사	○○○	2021.3.1.~2022.2.28.	이상없음	2022.06.03	이상없음	이상없음

교사	○○○	2021.3.1.~2022.2.28.	이상없음	2022.06.03	이상없음	이상없음
교사	○○○	2021.3.1.~2023.2.28.	이상없음	2022.04.18	이상없음	이상없음
교사	○○○	2021.3.1.~2023.2.28.	이상없음	2022.04.18	이상없음	이상없음
교사	○○○	2021.3.1.~2023.2.28.	이상없음	2022.04.18	이상없음	이상없음
교사	○○○	2021.3.1.~2023.2.28.	이상없음	2022.04.18	이상없음	이상없음
교사	○○○	2021.3.1.~2022.2.28.	이상없음	2022.06.03	이상없음	이상없음
교사	○○○	2021.9.1.~2022.8.31.	2022.04.18	2022.04.18	2021.09.01	2021.09.01
조리실무사	○○○	2022.4.13.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3.17	2022.03.17
조리실무사	○○○	2022.4.19.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3.17	2022.03.17
조리실무사	○○○	2022.4.20.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3.17	2022.03.17
조리실무사	○○○	2022.5.2.~2022.5.4.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3.17	2022.03.17
조리실무사	○○○	2022.6.7.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3.17	2022.03.17
조리실무사	○○○	2022.4.21.~2022.4.22.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4.08	2022.04.08

【조치할 사항】

- ① 무원중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하며,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 요구합니다.